

The Safe Sanctuaries Sample Policy

안전한 교회 정책(규정) 샘플

The following is the development guide for local churches to create and uphold a “Safe Sanctuaries” Policy within their communities.

다음은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전한 교회”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가이드입니다.

The below template is a guide for each local community to use to develop their own Safe Sanctuaries policy that is unique to their own ministry contexts. In addition to the below template, we also offer these resources to help local communities formulate their Safe Sanctuaries policies.

For assistance in creating a Safe Sanctuaries policy, and to have your policy certified, please reach out to GNJ’s Safe Sanctuary Coordinator.

아래 템플릿은 각 지역 커뮤니티가 각자의 사역 상황에 맞는 안전한 교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입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안전한 교회 구역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도 이 템플릿은 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회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책 인증을 받으려면 GNJ 의 안전한 교회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Standards for All Safe Sanctuaries Policies in GNJ (link here the checklist for approval)
2. If your community has programming that includes [Online Ministry](#) for children, youth or vulnerable adults, please refer to this resource from UM Discipleship Ministries.
3. For [Small Churches](#), please visit this resource for assistance from UM Discipleship Ministries.
4. For [Large Churches](#), please visit this resource for assistance from UM Discipleship Ministries.
5. For Local Churches engaging in hospitality and inclusion of [LGBTQIA+](#), children, youth or vulnerable adults, please visit this resource from UM Discipleship Ministries.

6. For even more resourcing on Safe Sanctuaries, please check out the [Safe Sanctuaries Library](#) from UM Discipleship Ministries.

7. Each local church will develop its own Volunteer Application and Incident Reporting Form for internal use.

There are examples of these on the Safe Sanctuaries website and must be approved by the Safe Sanctuaries Coordinator.

1. GNJ 의 모든 안전한 교회 구역 정책 표준. (승인된 링크)

2. 여러분 공동체에 어린이,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위한 온라인 사역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UM 제자 사역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3. 소형 교회를 위한 자료를, UM 제자훈련 사역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4. 대형 교회를 위한 자료를, UM 제자훈련 사역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5. 성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환영, 포용하는 지역 교회를 위한 자료가, UM 제자 사역 링크에 있습니다.

6. 안전한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UM 제자 사역의 안전한 교회 도서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각 지역 교회는 내부용으로 자체 자원봉사 신청서와 사건 보고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 웹사이트에 이러한 양식의 예가 있으며, 만드신 양식들은 안전한 교회 코디네이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o work with a team in the local church to contextualize each congregation's Safe Sanctuaries Policy- while there are standards required for each church (as noted above in link 1), every local church has their own set of ministry needs and programming. It is important to be intentional about the work that Safe Sanctuaries require as we live into our mission to protect and build the kingdom of God.

지역 교회는 연회 안전한 교회 팀과 협력하여 각 교회의 안전한 교회 정책을 교회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회에 필요한 표준이 있지만 (위 링크 1 참조), 모든 지역 교회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요구 사항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건설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ited Methodists of Greater New Jersey Safe Sanctuary Policy Development Guide
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안전한 교회 정책 개발 가이드

Safe Sanctuary Policy Development Guide Note: This sample is for general guideline use only; some sections may or may not apply to your local church setting. Your church policy should be written to address your local church and community safety issues. You are to use this document as a foundation for writing the policy for your local church and the ministry contexts you have.

안전한 교회 정책 개발 가이드 노트: 이 샘플은 일반적인 가이드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섹션은 지역 교회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책은 지역 교회와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지역 교회와 사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mportance of Policy & Mandate for the Church: God has called us to make our ministries safe and to protect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from abuse and exploitation. God has also called us to create communities of faith where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can be safe and grow strong. Jesus taught that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Mark 9:37 NRSV) and “If any of you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one of these little ones...it would be better for you if a great millstone were fastened around your neck and you were drowned in the depth of the sea” (Matthew 18:6 NRSV).

교회의 정책과 사명의 중요성: 하나님은 사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 9:37)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The Social Principl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tate, “...children must be protected from economic, physical, an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nd “we affirm that all persons are individuals of sacred worth, created in the image of God”(¶161, “Social Principles”).

At each child’s baptism, we affirm our responsibility to their safety by our congregational response, pledging: “With God’s help, we will so order our lives after the example of Christ, that this child, surrounded by steadfast love, may be established in the faith, and confirmed and strengthened in the way that leads to life eternal” (From Baptismal Covenant, Congregational Pledge II, The Book of Worship).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을 보면 "...어린이는 경제적, 신체적,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확인한다"(¶161, "사회 원칙")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아, 아동들을 위한 세례식을 행할 때, 우리는 회중의 응답을 통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여, 이 어린이가 주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 둘러싸여,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세례 성약, 회중 서약 II, 예배 집례서).

Building on these foundations, we recognize that our faith calls us to offer hospitality and protection to all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as well as volunteers and employees who are committed to ministering to them.

Worldwide, child abuse and neglect affect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of every age, ethnicity, and economic group.

Often, abuse occurs in places where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feel safe—homes, schools, camps, and even churches.

According to the U.S. Health and Human Services' recent report, the victim was related to or acquainted with the abuser in more than 90 percent of cases.

이러한 기초 위에,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은 보호받아야 할 것을 인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와 방임은 모든 연령, 인종, 경제 계층의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종 학대는 가정, 학교, 캠프, 심지어 교회 등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90% 이상이 가해자와 친척이거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light of thi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each local United Methodist Church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1. lessen the possibility that abuse will happen to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in the church;
2. create a place where victims can feel safe in disclosing abuse;
3. protect volunteers and employees who minister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and
4. allow known sexual offenders to safely join in a Christian community in the church while protecting the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who are a part of our congregations.

그리하여 연합감리교회와 각 지역 연합감리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세웁니다:

1. 교회 내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에게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인다;
2. 피해자가 사건을 편안하게 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원 봉사자와 직원들이 보호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4. 교회에 속한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 받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전과자라도 교회 내 공동체에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Summary of Issues & Scope of the Problem:

문제의 요약 & 문제의 범위

This guide identifies Safe Sanctuaries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tect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those who share in ministry with them; and known sexual offenders participating as part of our congreg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you use the best practices included in each area to update your local church's Safe Sanctuary policy.

Annually updating and adopting a policy reflective of current expertise is essential to create safe environments where ministry happens.

Effective implementation is vital to protect our ministry participants and reduce our risk.

Effective policy AND implementation create a respectful, loving setting for ministry.

Your policy should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your congregation, ministry, and setting.

이 안전한 교회 가이드에는 어린이, 청소년,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성 범죄 전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교회 정책 사항들을 권고합니다.

여러 좋은 모범 사례를 참고하며 지역 교회의 안전한 교회 정책을 업데이트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년에 한 번씩 활용 가능한 최신 전문 정책들을 리서치 하며 안전한 교회 정책들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실행을 통해 사역 참여자를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과 실행은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사역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의 정책은 여러분들 교회, 사역,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April 1996, adopted a resolution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child sexual abuse in the church.

The following is a reflection on the adopted resolution Book of Resolutions, 2016 #3084).

A central tenet of the Christian faith is the inherent value and worth of all children, youth, and adults.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are least able to protect themselves in our society and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buse and neglec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s eager to do all it can to protect the youth,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life of this congregation.

We believe implementing a policy and adopting procedures to protect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recognizes that: Our Christian faith calls us to offer both hospitality and protection to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The Social Principl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tate, “. . . children must be protected from economic, physical an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e social principles also state, “...all persons are individuals of sacred worth,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ragically, churches have not always been safe places fo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Neglect,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ccur in churches, both large and small, urban and rural.

The problem cuts across all economic, cultural, racial, and ethnic lines.

God calls us to make our churches safe places and to protect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from abuse.

Abuse prevention and ministry protection policies and procedures are essential for congregations, not only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but also for our volunteers and staff working with them.

The Gospel calls us to be engaged in ministry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Safe Sanctuaries: Reducing the Risk of Abuse in the Church for Children and Youth, page 10).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1996년 4월에, 교회 내 아동 성 학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안(2016 #3084, 결의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청소년, 어린이,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교회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명시하길, "... 아동은 경제적, 신체적,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 원칙은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임, 성적 학대, 착취가 크고 작은 교회, 도시와 시골 교회를 막론하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곳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학대 예방 및 사역자 보호 정책과 절차는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자원 봉사원들과 사역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복음은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안전한 교회: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학대 위험 줄이기, 10 페이지).

Jesus taught,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Mark 9:37 NRSV) and "If any of you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one of these little ones...it would be better for you if a great millstone were fastened around your neck and you were drowned in the depth of the sea" (Matthew 18:6 NRSV).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막 9:37)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We should not allow possible risks to undermine or stop our ministry. Rather, we must:

- Acknowledge the risks and develop a practical plan to address these issues
- Take steps to prevent harm to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and
- Continue to answer the Gospel's imperative to be in ministry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thus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lives
- Safe Sanctuaries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es that reflect those policies seek to fulfill this call for our church

우리는 존재하는 위험이 우리의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중단하게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 위험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복음의 명령에 계속 응답합니다.
- 안전한 교회 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는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역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합니다.

Safe Sanctuaries Policy Template for The Greater New Jersey Annual Conference

대 뉴저지 연회를 위한 안전한 교회 정책 템플릿

This is the Safe Sanctuaries Policy for (NAME OF CHURCH). As a United Methodist community of faith, we are committed to Wesley's three simple rules- to do no harm, to do good and to stay in love with God.

We recognize that our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in our community,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is a sacred gift, and we endeavor to treat the safety and upkeep of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peoples as such.

The below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our community of faith in conjunction with the standards set by the Greater New Jersey Annual Conference. All entities in this community of faith will be educated about this policy, and will be held to its standards.

이것은 (교회이름) 안전한 교회 정책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웨슬리의 세 가지 생활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안에 거하라.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 취약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신성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래 정책은 대 뉴저지 연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는 이 정책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efinitions related to Safe Sanctuaries Policies & Procedures: A common set of definitions provides a useful frame of reference for policy development.

Churches may have terms specific to their ministry situation indicating the need to modify those listed here or create their own set of definitions.

Child: In the United States, this term is commonly used to identify anyone age eleven or younger.

Youth: Anyone not a "child" and under eighteen (age of legal majority).

Adult: Anyone who has reached the age of legal majority and has finished high school.

Vulnerable person: A person whose ability to protect themselves from violence, abuse, or neglect is significantly impaired through social,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illness.

Paid staff person: Someone paid by the church, overseen by the staff/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and screened according to the church's Safe Sanctuary policy and any additional required personnel screening.

Unscreened adult: Someone who has not been screened.

Screened adult: A volunteer who has gone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involving a criminal background check, reference check, interview, and risk reduction training. These people may or may not be members, but they must be regular attendees and active in the church for at least six months.

Roamer: A Safe Sanctuaries trained/screened adult leader who meets the minimum age requirements as defined in this policy and moves throughout the facility to provide additional oversight and supervision during activities.

Ministry supervisor: A screened individual, staff, or volunteer, responsible for a particular ministry with oversight of the leaders in that ministry.

Physical abuse: Violent, non-accidental contact that results in injury.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triking, biting, or shaking. Injuries include bruises, fractures, cuts, and burns.

Sexual abuse: Any form of sexual activity with a child/youth/any other vulnerable person, whether at the church, at home, or in any other setting. The abuser may be an adult or another minor.

Emotional abuse: A pattern of intentional conduct that crushes a child's/youth's/other vulnerable person's spirit and attacks his/her self-worth through rejection, threats, terrorizing, isolating, or belittling.

Neglect: When a person with responsibility for a child, youth, or other vulnerable person fails to care for that individual's physical and/or emotional needs.

안전한 교회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정의: 공통된 정의는 정책 개발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사역 상황에 따라 밑에 나열된 용어를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정의된 용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미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11 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소년: '아동'이 아닌 18 세 미만(법적 성년 연령)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 법적 성년에 도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취약한 사람: 사회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폭력,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유급 직원: 교회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목사 교구 관계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교회의 안전한 교회 정책 및 추가적으로 채용 심사에 따라 고용된 사람.

신원 조회 받지 않은 성인: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신원 조회를 받은 성인: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인터뷰, 위험 감소 교육을 포함한 선별 절차를 거친 자원 봉사자입니다.

이들은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최소 6 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순찰 감시자: 안전한 교회 훈련/검사를 받은 성인 리더로, 안전한 교회에 정의된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한 자로 행사 진행 중에 시설 곳곳을 이동하며 감독,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방임: 아동, 신체적/또는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회 감독관: 특정 사역의 선별된 개인,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학대: 우발적 사고가 아닌 부상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접촉.

여기에는 때리기, 물기, 흔들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상에는 타박상, 골절, 베인 상처, 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 교회, 가정 또는 기타 모든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 가해자는 성인 또는 다른 미성년자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거부, 위협, 공포, 고립, 비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타 취약한 사람의 정신을 해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Facts about Abuse:

학대에 관련된 사실들:

- **It Can Happen Anywhere:** The child victim is never responsible for causing the abuse and is never to be blamed. The child victim is never capable of consenting to abusive behavior. Child sexual abuse is ALWAYS wrong and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abuser.

- **학대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 사건 경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 행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는 항상 잘못된 것이며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 **Knowing the Statistics:** Studies have estimated that 1 out of 3 girls are sexually abused before the age of 18. Estimates state that 1 out of 7 boys are sexually abused, but the number may be higher because of a reluctance to report occurrences.

- **통계를 통해 알게 된 것들:** 연구에 따르면 여아 3 명 중 1 명이 18 세 이전에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의 경우 7 명 중 1 명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The Church at Risk:** The risk for churches is especially high because we're seen as "trusting organizations" and we've been "notoriously INACTIVE when it comes to screening volunteers and/or employees who work with kids."
Churches routinely provide opportunities for close contact with children.

- **교회의 위험성:** 교회는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고, 교회는 일상적으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역자나 자원봉사자 세우는데 있어 선별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 **Indicators of Child Abuse:** Children showing anxiety about coming to church or being left in a class or program, or reluctance to participate when he/she had previously been enthusiastic may be an indicator of abusive behaviors.

Abused children may have fears of specific individuals experiencing nightmares or showing hostility.

- **아동 학대 증상:** 아동이 교회에 오는 것, 수업, 프로그램에 빠지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이전에 활동 참여에 열정적이었으나 활동 참여를 꺼린다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은 악몽을 꾸거나 특정 개인에 대한 두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 **Abusers: Who Are They:** Less than 20% are strangers- 93% of victims know their abuser. People who abuse children look and act just like everyone else.

Those who sexually abuse children are drawn to settings where they can gain easy access to children, such as sports leagues, faith centers, clubs, and schools.

- **학대자:** 그들은 누구인가: 피해자와 관계없는 사람은 20% 미만이며, 93%는 학대자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게 행동합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종교 센터, 클럽, 학교 등 아동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합니다.

- **How Does Abuse Happen?**

Children are vulnerable, and the abuser is powerful; without a comprehensive strategy against abuse, we are taking a needless risk that harm may be done to our children or our workers with children.

Strategies must be supported by the entire congregation and, applied to each worker involved in children's ministries.

We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the safety of any- adult/one--child situation. Look for group situations where possible. Set an example by personally avoiding one-adult/one-child situations with children other than your own.

There should never be a situation in ministry where one adult is left alone with one child.

- **아동 학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어린이들은 약하지만 학대자는 강합니다: 학대에 대한 포괄적 전략이 없을 때, 아이들과 아동 사역자들에 대한 피해가 노출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전략들은 교회 전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아동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동과 함께 있는 성인 한 명/ 아동 한 명의 상황을 피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한 명의 성인과 아동 한 명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Consequences of Child Sexual Abuse: Of foremost importance is the child/ youth or vulnerable adult who has been harmed; he or she must be cared for. The harm that is done to the child/youth/vulnerable adult is entirely life-altering, and every step should be taken to care for the victi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viding support and resources for the continued care and wellbeing of the child/youth/vulnerable adult.

- 아동 성학대의 결과: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은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이들을 보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학대 사건은 아동/청소년/취약계층 성인에게 지울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해 끊임없는 보살핌과 치유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 Many victims are created, including the person harmed, that person's family, the congregation, and often the family of the abuser. The congregation's wounds may continue well beyond litigation - that doesn't provide healing among the members. Litigation can go on for two or more years. Financial consequences are somewhere around \$750,000 if innocent/at least \$1-2 million if proven guilty. No congregation can afford, financially, ethically, or morally, to fail to implement strategies for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 피해를 통해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과 회중, 그리고 종종 가해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입는 상처는 소송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치유를 공유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송은 2 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출의 경우 무죄일 경우 약 75 만 달러,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소 100 만~200 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어떤 교회든 재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동 성 학대 감소와 예방을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 **GNJ Insurance:** All churches are covered because the Conference has a policy, and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every church and its programs, is implementing some type of policies and procedures.

As is true with most situations, the extent of coverage varies, depending on what the local church has done to proactively prevent abuse from happening.

- **GNJ 보험:**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연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교회는 교회 사역에 대한 어떠한 유형으로든 교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실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상황이 그렇듯이, 보험 적용 범위는 지역 교회가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Minimizing Opportunity for Abuse:** If you eliminate one-adult/one-child situations, you'll dramatically lower the risk of sexual abuse for your children/youth/vulnerable adults. Expect programs to perform careful screening and background checks on all persons working with children/youth/vulnerable adults Youth-serving organizations outside of the local church should have policies in place for dealing with suspicious situations and reports of abuse.

Furthermore, these organizations should regularly train their staff to prevent, recognize and react responsibly to child sexual abuse.

- **학대 발생 최소화하기:** 성인 한 명과 아동 한 명이 함께 있는 상황을 없애면

아동/청소년/취약계층 성인의 성적 학대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취약계층 성인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철저히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청소년들이 외부 봉사할 때 교회는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과 학대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 학대를 예방하고,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스태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Selection and Screening of Church Staff and Adult Volunteers: We should not allow possible risks to undermine or stop our ministry. Rather, we must:

- Acknowledge the risks and develop a practical plan to address these issues

- Take steps to prevent harm to our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and
- Continue to answer the Gospel's imperative to be in ministry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thus making a difference in their lives
- Safe Sanctuaries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es that reflect those policies seek to fulfill this call for our church .

교회 직원 및 성인 자원봉사자 선발 및 신원조회: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사역이 약화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복음의 명령에 계속 응답합니다.
- 안전한 성소 정책과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부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A. The pastor in charge or his/her designee and the staff parish relations committee ar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process for recruiting, screening, selecting, training, and supervising non-appointive church staff (¶ 258.12 Book of Discipline, 2016).

The pastor will utilize **Ministry Safe? for** background checks and screenings as well as training for staff and volunteers.

A. 담당 목회자 또는 목회자가 지정한 사역자와 교구 관계 위원회는 연회가 임명하지 않은 비 임명 교회 직원을 모집, 심사, 선발, 훈련 및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 258.12 장정, 2016).

목회자는 Ministry Safe 를 통해 신원 조회를 하고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B. All adults who volunteer with/come into contact with the church's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and each church-paid staff person, including clergy, will be screened and trained using Ministry Safe.

B. 교회의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 계층과 접촉하는 모든 성인들과, 성직자 포함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은 Ministry Safe 를 사용하여 신원조회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C. Screening Procedures:

신원 조회 절차:

1. Each person being considered to volunteer with/come into contact with children, youth,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whether as a volunteer or paid staff person, shall fill out a volunteer application (for an appropriate guide to what this application should look like, please refer to the appendix section).

Anyone interested in volunteering with youth, children, or vulnerable persons must be a regular attending member for at least six months.

1. 아동, 청소년 및/또는 기타 취약계층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자원 봉사자 유급 직원은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의 적절한 양식에 대한 안내는 부록 섹션을 참조하세요).

청소년, 아동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2. Before placing the applicant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with children,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a designated paid staff member or person charged with specific responsibility will interview the applicant and review the written volunteer application.

2. 신청자를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계층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하기 전에 유급 직원 또는 책임을 맡은 담당자가 신청 대상과 면담을 하고 자원봉사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3. Child Abuse Survivor Applicants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physical or sexual abuse need the love and acceptance of this church family. A person's experience with abuse and the recovery process may be pertinent to the individual's suitability as a youth, children's or other vulnerable people's ministry worker.

Applicants who are survivors of abuse should discuss this in confidence with the person who conducts the confidential interview. If an applicant is uncomfortable doing so, he/she may have the interview conducted by a pastor.

When evaluating candidates, the following factors will be considered if an applicant is a survivor of child abuse:

3. 아동 학대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했던 성인 지원자를 향해 교회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하고 학대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 아동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적합할 경우가 있습니다.

학대 경험 지원자와의 면접 내용은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원자가 담당자와의 면담을 불편해한다면, 목회자가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평가할 때, 지원자가 아동 학대 피해자였었던 경우 다음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A. whether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committed an act of child abuse or molestation (anyone who has maltreated children may not serve in ministry with children,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B. the extent of professional counseling the applicant has received;

C. the opinion of references, especially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ave served the applicant;

D. the opinion of leaders in other churches or youth organizations in which the applicant has been involved; how closely the church is able to supervise and monitor the position for which the applicant is applying.

A. 후보자가 이전에 아동 학대 또는 성추행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여부. (아동을 학대했던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B. 지원자가 받은 전문 상담은 어떤 것인지 확인 합니다;

C. 추천서, 특히 지원자와 함께 했던 전문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D. 후보자가 사역했던 다른 교회 또는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의 의견; 교회가 후보자를 고용 했을 때 감독자가 어디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The person conducting this interview will contact the references provided on the screening form and any additional people as the circumstances dictate. A written record of such contacts will be retained with the screening form.

4. 이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은 심사 양식에 제공된 추천인 및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이러한 접촉에 대한 서면 기록은 심사 양식과 함께 보관됩니다.

5. The reference forms, volunteer application, and any notes from the interview will be retained in a designated confidential place even after termination or completion of services. Background checks are not to be deleted from Ministry Safe.

5. 추천서, 자원봉사 신청서, 인터뷰 메모는 봉사활동 종료 또는 완료 후에도 지정된 기밀 장소에 보관됩니다. 신원조회는 Ministry Safe 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6. Each person applying to work with children, youth,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shall authorize the church to conduct a criminal background check through Ministry Safe.

6. 어린이, 청소년 및/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지원하는 각 사람은 교회가 Ministry Safe 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D. After the interview and background check have been accomplished, the decision will be made to approve or not approve the applicant as a paid staff member/screened adult volunteer who will work with youth, children,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D. 인터뷰와 신원 조회가 완료된 후, 후보자는 청소년, 어린이 및/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일할 유급 직원/선별된 성인 자원봉사자로 승인 할지 안 할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n applicant should not be approved, those people involved with the decision should handle it in a sensitive manner.

The pastor in charge or her/his designee should inform the applicant in person.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decision should be given, whenever possible.

E. 후보자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 목회자 또는 그 담당자는 후보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가능한 경우 결정 이유를 구체적 알려야 합니다.

F. It is important that all records (except for the background checks and training reports which are to be kept online in Ministry Safe) be kept in a locked cabinet in the pastor in charge's office.

There should be a system in place that offers those who need these records appropriate access and a safe place to be stored to assure confidentiality.

These documents should be kept for 20 years.

F. 모든 기록은 (Ministry Safe 에 온라인으로 보관해야 하는 신원 조회 및 훈련 보고서 제외) 담당 목회자 사무실에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을 열람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기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기밀 문서는 20 년간 보관합니다.

Note about Selection and Screening of Church Staff and Adult Volunteers: *If a known offender wants to participate in ministries within the church, please contact your District Superintendent for resources.*

교회 직원 및 성인 자원봉사자 선발 및 신원 조회에 관한 참고 사항: 범죄 경력자가 교회 내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감리사와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Training: The pastor in charge or designee and staff parish relations committee shall ensure that regularly scheduled annual training focused on foundational and current issues of child protection is available to and received by those working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Attendance at this training shall be required prior to involvement in affected areas of ministry by all paid staff members, screened and unscreened adults, and youth helpers who work consistently with children, youth,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At a minimum, the basic training with Ministry Safe is the Sexual Abuse Awareness Training. Based on each individual church's ministry context, other training may be necessary. Please reach out to the Safe Sanctuaries Coordinator for help.) The entire congregation should be educated on the church's Safe Sanctuary Policy.

훈련: 담당 목사 혹은 담당 사역자 그리고 교회 사역 관계 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기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및/또는 기타 취약계층과 지속적으로 일할 모든 유급 직원, 신원조회 받은 성인 및 받지 않은 성인, 청소년 도우미는 해당 사역에 참여하기 전에 안전한 교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Ministry Safe 기본 교육은 성적 학대 인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각 교회의 사역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회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안전한 교회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General Supervision

일반적인 감독

1. All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will be supervised by two screened adults.

A **designated roamer shall** monitor the room when it is impossible to have two leaders present (this should be an exception and not the ideal situation; please refer to UMC Disciple **“Roamer Rules”** article.)

1.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사역자는 신원조회 받은 성인 2 명이어야 합니다.

두 명의 성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순회 감독관이 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UMC 제자 "감독관 규칙" 문서를 참조).

2. When reasonably feasible, each room set aside for children/youth should have a door with a window. (Windows in doors tend to remove the opportunities for secrecy and isolation, conditions every child abuser seeks.)

Half doors should be considered for toddlers to second-grade children to keep them from wandering outside the classroom.

Windows should remain free from obstruction; avoid covering them. If there are no windows in the door, the door should remain open.

2. 가능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각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창문이 있는 문은 모든 아동 학대자가 원하는 비밀스럽고 고립된 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2 학년 어린이는 자유롭게 교실 밖을 나갈 수 없는 문이 아래, 위로 나누어진 반문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창문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되고, 문에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3. The “two-person rule” is defined as having at least two unrelated people in any classroom or setting, who are screened, adult volunteers or staff persons.

When this is not possible, a designated roamer should visit the room regularly. If using a roamer, keep the doors open.

3. '성인 2 인 원칙'의 원칙은, 신원조회를 마친 성인들 중에 식구나,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이해관계 없는 성인 두 명이 교실 혹은 이에 준하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된 순회 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을 방문해야 하며,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Classroom Activities:

교실 활동들:

1. Crib/Toddler to Second Grade: Two unrelated screened adults will be present for all classroom activities involving infants, toddlers, and children in grades K-2. In addition, a designated roamer should check each classroom on a regular basis. Two adult leaders in the classroom are the expectation; more can be added.

1. 유아부터 2 학년: 모든 영유아와 관련된 교실 활동에는 신원조회를 받은 이해관계 없는 성인 2 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순회 감독관이 각 교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실에 두 명의 성인이 있어야 하면 두 명 이상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2. Grades 3-5 Two Screened adults will be present for all classroom activities. In addition, a designated roamer should check each classroom on a regular basis. Children should be escorted to and from bathroom facilities or when otherwise leaving the room by either one of the adults or by a designated roamer who checks on all classrooms. Where two adults are not available, the classroom doors are to remain open, and a designated roamer should visit the classroom regularly.

2. 3 - 5 학년 모든 교실 활동에는 신원조회를 받은 성인 2 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순회 감독관이 각 교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화장실에 갈 때나 교실 밖으로 나갈 때는 성인 중 한 명 또는 모든 교실을 확인하는 순회 감독관이 어린이와 동행해야 합니다. 성인 2 명이 없는 상황인 경우 교실 문은 열려 있어야 하며 순회 감독관이 정기적으로 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3. Grades 6-12 Classroom activities will be led by at least two screened adults. A designated floater shall monitor the room when it is not possible to have two leaders present. Open Door Policy Parents, volunteers, or staff of the church will be permitted, as reasonableness dictates, to visit and observe all programs and classrooms at any time.

3. 6 - 12 학년이 교실 안에서 활동 시 최소 신원조회를 받은 성인 2 명이 인도해야 합니다. 두 명의 인도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순회 리더가 교실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개방 문 정책이란 학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교회 직원이 언제든지 교실을 방문하고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 합니다.

Sign-in/Sign-out Procedure: Adults responsible for children who are infants through toddlers should sign their children in and indicate the names of authorized person(s) to whom the child may be signed out.

Adults responsible for children aged 2 through second grade should sign their child in and out of Sunday school and other children's activities.

Non-authorized adults should not be allowed to pick up children.

Older siblings, parents, and other adults may be authorized to pick up children when they are identified on a child's care and information records.

This record of authorized adults with pick-up privileges should be updated annually.

로그인/로그아웃 절차: 영아부터 유아까지의 경우, 자녀를 프로그램에 등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 2 세부터 초등학교 2 학년까지의 어린이의 입출입을 책임지는 성인은 주일학교 및 기타 활동 시 출입 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성인이 어린이를 픽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부모 및 기타 성인은 아동의 출입 정보 기록에서 확인된 경우 아동을 픽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픽업 권한이 있는 성인에 대한 기록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upervision of Non-Classroom Activities: At least two screened adults will be present for all non-classroom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 youth,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Any meetings held in an individual's home will be supervised by at least two screened adults, with two adults present who are not members of the same family. Meetings held in an individual's home must be pre-approved by the child's/youth's/vulnerable person's parent or guardian.

교실 외 활동 감독: 어린이, 청소년 및/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실 외 활동에는 최소 2 명의 신원조회를 마친 성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의 집에서 개최되는 모든 모임은 신원조회를 마친 성인 2 인 이상이 감독하며, 같은 가족이 아닌 성인 2 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의 집에서 개최되는 모임은 아동/청소년/취약계층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ounseling of Youth,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People: In instances where circumstances dictate that counseling would be most effective on a one-on-one basis, an

appropriate paid church staff person may meet individually for a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e knowledge of at least one other paid staff member and with permission of a parent or guardian.

During any one-on-one conversation with children,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the door of the room used should remain open for the entire session, unless there is glass in the door or wall that gives a clear view into the room.

If another adult is not in the building when the counseling occurs, the session should be moved to a public place, such as a restaurant or outside where other people are present

청소년, 아동 및 기타 취약계층과의 상담: 일대일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된 유급 교회 직원이 최소 다른 유급 직원,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일대일 상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과 일대일 대화를 하는 동안, 문이나 벽에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가 없다면 상담하는 동안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상담 진행 시 건물 안에 다른 성인이 없는 경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Notes about General Supervision:

일반 감독에 대한 참고 사항:

NOTE 1: At the initial meeting, the adult should first determine if he/she is qualified to address the child's/youth's/other vulnerable person's needs effectively. Counseling should be limited to no more than three sessions. Referral to another more qualified counselor should always be considered.

참고 1: 사전 미팅에서, 상담자는 먼저 자신이 아동/청소년/기타 취약한 사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은 3 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격을 갖춘 다른 상담사를 추천하는 것을 항상 고려하며 상담해야 합니다.

NOTE 2: This section is not meant to govern a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in a paid counseling relationship with a child,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Time Following Group Events Following group events, it is inevitable that occasionally a child's/youth's/or other vulnerable person's transportation arrives after all other participants have departed.

Two screened leaders should be scheduled to be present until all participants have been picked up. In some circumstances, a child/youth/other vulnerable people may unavoidably be supervised by one screened adult.

When this occurs, the screened adult is responsible for exercising his/her best judgment for the participant's well-being as well as his/her own.

Example—Have the parents on the phone with you until they arrive.

참고 2: 이 항목은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유료 상담사와의 상담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 행사 후, 여러 참가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 아동/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계층의 교통편이 도착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픽업될 때까지 신원조회를 받은 인솔자 2 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어린이/청소년/기타 취약계층을 신원조회 받은 성인 1 명이 감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조회 받은 성인은 그 상황 속에 안전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 -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부모와 전화 통화하기.

Building Compliance Requirements: Safe Sanctuaries policy applies to all church-operated programs for children, youth, or vulnerable adults.

These programs must b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ose that are non-church operated.

The following are basic assumptions made as they relate to both church and non-church-operated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adult programs:

1. All buildings in which such programs are housed shall have any necessary "certificates of occupancy."
2. All groups conducting such programs shall have the necessary certificates of insurance for both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They shall be displayed as required by law.
3. All such programs shall conform to Federal and State wage and tax laws for employees.
4. Any group using the church building should have its own protection policy for children, youth, and young adults.

건물 규정 요건: 안전한 교회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교회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가정 원칙들입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든 건물에는 "사용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책임 및 산재 보험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모든 프로그램 운영 직원에 대한 연방 및 주 임금 및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자체 보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Transportation General Rules: *Transporting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is an important concern.*

Their safety can be at risk in a variety of ways. Therefore, certain discretion must be used depending upon the event attended, the locale of the event, and the age group participating. This policy includes both requirements and guidelines. When feasible, there should be adherence to the recommendations and the guidelines.

It is expected that the requirements will always be followed.

일반 운송 규칙: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의 운송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참석자들은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행사 장소, 참여 연령대에 맞는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서에는 필수요구 사항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권고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요구사항은 항상 준수되어야 합니다.

Requirements for Transportation:

교통수단 관련 필수 요구 사항:

1. Drivers must be screened adults with a Motor Vehicle background-specific check in addition to their background check and Ministry Safe Training.
2. When a child/youth/other vulnerable person is transported in any vehicle, the driver must be either the child's/youth's/other vulnerable person's parent/guardian, a screened adult or a paid staff person who is at least 25 years old.

3. When a child/youth/other vulnerable person is transported in a church-owned vehicle, the driver must be at least 25 years of age; an exception is made when the driver is a paid staff member who is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for whom a motor vehicle record search has been made and the record has been found to be satisfactory by the pastor in charge or his/her designee.

(This is subject to other church policies, state law, and insurance regulations.)

4. Drivers must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for the vehicle being operated. For example, if driving a church bus, a commercial driver's license is required. A copy of the driver's license should be on file in the church office.

5. Drivers must require that passengers wear seat belts; the number of passengers must not exceed the number of seat belts.

6. Drivers should be advised of a designated route and should not deviate from it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or road detours.

7. Drivers should not use cell phones unless required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drivers. Any use should be hands-free and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Drivers should not text/message while driving.

8. When a trip is planned and the destination is expected to be 100 miles or more from the point of departure, drivers are to be listed on an "approved driver list" maintained in the church office.

9. People who regularly drive church-owned vehicles are to be listed on an "approved driver list" maintained in the church office.

10. To be listed on the "approved driver list," a motor vehicle record search must have been conducted, and the pastor in charge or his/her designee must determine if the record is satisfactory.

11. Drivers will read and sign an acknowledgment form indicating that the Child,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Protection Policy has been read and will be followed (See Appendix Section).

1. 운전자는 교통국 신원 조회 및 Ministry Safe 안전 교육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2. 어린이/청소년/기타 취약한 사람을 일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청소년/기타 취약한 사람의 부모/후견인이거나, 신원조회를 받은 성인 또는 25 세 이상의 유급 직원이어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기타 취약한 사람을 교회 소유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전자는 25 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로, 운전자가 18 세 이상 유급 직원으로 담당 목회자 혹은 인정된 감독자가 운전자의 자동차 기록 조회 확인 후에 운전자로 인정하면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교회 정책, 주법 및 보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운전자는 운전할 차량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상업용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은 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승객 수는 안전벨트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운전자는 지정된 경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긴급 상황이나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로를 벗어나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의사소통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통화 사용은 핸드프리로 해야 하며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8. 계획된 여행인 상황에서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100 마일 이상일 경우, 운전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운전자 승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교회 소유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회 사무실에 보관된 "승인된 운전자 명단"에 등재되어야 한다.

10. "운전자 승인 명단"에 등록되려면 자동차 기록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며, 담당 목회자 또는 이에 준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운전자는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자 보호 정책을 읽고 준수 할 것을 서명을 통해 서약 합니다. (부록 섹션 참조).

Guidelines for Transportation:

운행 가이드라인

1. Drivers should be accompanied by at least one other adult and more than one youth.
2. Drivers should receive training for any church-owned vehicle being operated.
3. Youth who drive their own vehicles should be reminded regularly of the importance of vehicle safety.

1. 운전자는 운전자 외에 최소 한 명의 성인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차량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청소년이 있을 경우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는 반드시 교회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차량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Overnights, Trips, Retreats: Trip and retreat settings can call for different child/youth/other vulnerable people protection requiremen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What follows are the requirements and guidelines of this policy. The requirements should always be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etting, who is in attendance, etc., some or all of the guidelines should be implemented as needed. Those in charge of the trip or retreat should be mindful of both requirements and guidelines, in addition to applying their own wisdom to the needs of a given occasion.

숙박, 여행, 수련회: 여행 및 수련회 환경에서는 상황에 맞는 아동/청소년/기타 취약자 안전 보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정책의 필수 사항과 지침들입니다.

필수 사항들은 항상 이행되어야 합니다. 행사 상황과 참석자에 따라 여러 사항들이 일부 혹은 전부 실행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참석자 등의 상황에 따라 필수 사항 혹은 지침들을 지혜롭게 실행해야 합니다.

Requirements for Overnights, Trips, Retreats

숙박, 여행, 수련회 필수 요건들

1. There will be at least two screened adults present for all trips, retreats, and other events where the children, youth, and /or other vulnerable people gather overnight at, or away from, the church campus.
2. There will be at least one screened adult for each gender present at coed overnight events.

At single-gender overnight events, at least one of the two screened adults present shall be of the same gender as the children/youth/other vulnerable people who are present. In settings where folks are in ministry with LGBTQIA+ or folks who are not within the gender binary, please refer to our appendix section for help on how to create safe spaces for all people.

3. The person in charge of youth/children/other vulnerable people for each overnight trip and/or retreat shall carry parental permission forms, including permission for emergency medical care. (See our appendix section)

1.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이 교회 캠퍼스 또는 외부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모든 여행, 수련회 및 기타 행사에는 신원 조회를 받은 성인 2 인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2. 남녀 합숙 행사에는 각 성별 방을 감독할 최소 한 명 이상의 신원조회를 받은 성인이 있어야 하며, 합계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동행합니다.

하나의 성별이 하루 이상 행사를 가질 경우 참석하는 성인 2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참석하는 아동/청소년/기타 취약 계층과 같은 성별이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또는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일 때는 부록 섹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참고합니다.

3. 행사 담당자는 여행 및 수련회의 청소년/아동/기타 취약계층 부모로부터 행사 참석 확인서와 함께 응급 치료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록 섹션 참조)

Guidelines in a Hotel Type Setting: rooms should be assigned as follows:

호텔 배정 가이드라인: 객실은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Separate rooms for adults and child/youth/other vulnerable people (where applicable) should be assigned with at least two participants per room except where specific situations dictate a different arrangement.

2. Assignments should be made so that an adult room is between two children's/youth's/other vulnerable person's rooms.

3. Adults should make random monitoring hall trips and room checks at night. This should be done by two adults of the same gender as those being checked. Again, please refer to our appendix section for guidelines in inclusive settings.

4. A hotel should be selected where the rooms are open to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i.e., do not open to the outside).

1. 성인과 아동/청소년/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방을 배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한 방에 최소 2 명의 참가자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기타 취약계층의 방 사이에는 성인 방을 배정해야 합니다.

3. 성인들은 야간에 수시로 순회하며 방들을 확인 합니다. 점검 객실의 성별과 동일한 성인 2 명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부록 섹션을 참조하세요.

4. 호텔은 객실이 건물 내부로 열리는 곳(즉, 외부로 열리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Online Safety Use of Electronics or Media Communications Guidelines: these may be useful tool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ministries. However, in such circumstanc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all be met:

온라인 전자 기기 및 미디어 통신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 아동 및 청소년 사역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The volunteer or staff person shall never initiate a connection (friending, following, etc.) on social media.

2. If a child, youth, or other vulnerable person initiates a connection, that individual's parent or guardian as well as the volunteer or staff member's supervisor shall be notified.

3. If an adult leader receives a private text from a child,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that seems questionable, the leader should immediately end the conversation in the virtual space and offer opportunities to have the conversation in person and in compliance with the earlier guidelines for one-on-one conversations. The ministry supervisor and/or parent/guardian should be made aware of the incident immediately.

3a. Note: If an in-person meeting is not possible, those involved will determine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in compliance with the earlier guidelines for one-on-one conversations.

4. Adult leaders should post photos on social network sites only with prior written permission granted by a parent/guardian. When posted, PHOTOS MUST NOT BE TAGGED with names or location indicators.

All photos must be appropriate and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e ministry event.

5. All in-person protection policies apply to online platform meetings like Zoom, Skype, Messenger, Facetime, Discord, Instagram and so on. (For example, two unrelated adults should be present in the virtual room just as they would be in a physical room.)

We recommend using caution and understanding platforms before using them, and we do not recommend apps like Snapchat or anything that deletes messages.

6. All online activities should use the official church account, not a personal account.

7. Communication about online meetings should be shared with parents/guardians as well as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8. Adult leaders and participants should use their real names as usernames.

9. Attendance of online meetings should be documented.

10. All electronic communications shall be documented and retained.

1. 자원봉사자 또는 사역자는 소셜 미디어로 행사 참석자 (친구 추가, 팔로우 등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2.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이 소셜 미디어로 신청, 연결되면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원봉사자 또는 사역자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성인 인도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으로부터 의심되는 개인 문자를 수신 했을 경우, 인도자는 즉시 미디어 상에서의 대화를 종료하고 일대일 대면 대화 지침에 따라 사역 담당자 및 부모/보호인에게 해당 사건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3a. 참고: 대면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사람들은 지침에 따라 일대일 대화에 대응하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4. 성인 인도자는 부모/보호자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참석자 사진을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할 때 사진에 이름이나 위치 표시를 태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진은 사역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5. 모든 대면 보호 정책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 모임인, 줌, 스카이프, 메신저, 페이스타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에도 적용됩니다. (예, 가상 회의실에는 실제 회의실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 관계가 없는 성인 2 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의 기울이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Snapchat 과 같이 메시지 삭제가 가능한 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모든 온라인 활동은 개인 계정이 아닌 교회 공식 계정을 사용 합니다.
7. 온라인 모임에 관한 정보는 부모/보호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공유 되어야 합니다.
8. 성인 인도자와 참가자는 실명을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9. 온라인 회의 출석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10. 모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들은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Child Abuse: Some form of mandatory reporting is present in every state in the U.S. Voluntary reporting is available in every state. While legal requirements may vary from state to state, the moral mandate to report child abuse or neglect is a requirement for all who care for and lead ministry with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The pastor in charge or her/his designee should identify applicable laws for the church/ministry based on state and local statutes and include both the substance of the law and the pertinent reporting procedures in their local Safe Sanctuary policy.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 미국의 모든 주에는 여러 형식의 의무적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자발적 보고서는 모든 주에서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목회자 또는 그 사역자는 주 및 지역 법령에 따라 교회/사역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을 파악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과 법률 관련 신고 절차를 모두 안전한 교회 정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The procedure of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Child Abuse: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 절차

A. Immediately, yet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the sacred worth of the accused, remove the accused from fur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youth, and/or other vulnerable people.

Once the proper authorities have been contacted and the alleged victim's safety is secured, the pastor in charge or other designated people should inform the accused that abuse has been reported.

A. 신속하게 대응 하면서도,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및/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과 더 이상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승인된 당국 기관에 연락하고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면 담당 목회자 또는 담당 사역자는 피고인에게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B. If abuse is observed by, disclosed to, or suspected by a volunteer and/or paid staff member of the church, the observer shall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ministry supervisor and the pastor in charge. Suppose the pastor in charge is not available or is implicated in the abuse.

In that case, the matter should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district superintendent and the proper authorities, as required by state and local law.

The district superintendent will take responsibility,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rules of The Book of Discipline with respect to claims against a pastor. If the district superintendent is not available, the incident should be reported to the bishop's office immediately.

Reporting in PA: 1-800-932-0313 (Child Line)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port online, [click here](#).

For information about who is a mandated reporter in PA, [click here](#).

Reporting in NY: 1-800-342-3720 (New York State Child Protective Services) for more information on reporting and to understand who is a mandated reporter, and a voluntary reporter, please [click here](#).

Reporting in NJ: 1-877-652-2873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for more information on reporting, please [click here](#).

B. 교회의 자원봉사자 및/또는 유급 직원에 의해 목격되거나, 의심되거나, 학대가 공개 되었을 경우, 목격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감독자이나 담당 목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담당 목회자가 부재중이거나, 목회자가 동일한 사건 혹은 다른 학대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건은 즉시 지역 감리사에게 보고 되어야 하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승인된 당국 기관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지역 감리사는 목회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장정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 감리사가 부재 중인 경우, 해당 사건은 즉시 연회 감독 사무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신고: 1-800-932-0313(아동 보호 서비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펜실베이니아주의 의무 신고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욕주 신고: 1-800-342-3720 (뉴욕주 아동 보호 서비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고의무자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저지 신고: 1-877-652-2873 (아동 및 가족 담당)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C. Notify the parents/guardian(s) of the victim and take whatever steps are necessary to assur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child, youth, or other vulnerable people until the parent(s) or guardian(s) arrive.

NOTE: If one or both of the parents is the alleged abuser, follow the advice of local authorities concerning notification of others.

C. 피해자의 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아동, 청소년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학대 혐의자인 경우, 누구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승인된 당국의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D. Take all allegations seriously and reach out to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mily. Show care and support to help prevent further hurt. Remember that the care and safety of the victim is the first priority. Respond in a positive and supportive manner to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mily.

D. 모든 혐의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에 염두 해두며 추가적인 상처를 방지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지원 방식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 The church should provide a supportive atmosphere to all those who are affected, offering both objectivity and empathy as it seeks to create a climate in which healing can take place.

E. 교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F. After having reported the suspected abuse to the proper authorities, the pastor in charge is to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district superintendent if he/she has not already done so. If the district superintendent is unavailable, the incident should be reported to the bishop's office.

F. 학대 의심 사례를 관계 당국에 신고한 후에, 담당 목회자는 사건 보고가 지역 감리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사건을 지역 감리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 감리사가 부재중일 경우, 연회 감독 사무실에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G. Keep a written report of the steps taken by the church in response to the reported abuse. (See Child/Youth/ Other Vulnerable Person Protection Incident Report Form in our appendix section). The report should be brief and contain only factual information relevant to the situation. It should be kept in a secure place. The report should be written in ink or typed to prevent it from being changed.

G. 교회는 학대 신고 자료를 서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보관합니다. (부록 섹션의 아동/청소년/기타 취약자 보호 사건 보고서 양식 참조).
보고서는 간결하게 상황과 관련된 사실 정보만 기록한 후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보고서는 변경 할 수 없는 잉크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H. Any contact with the media should be handled by the pastor in charge.

H. 언론사와의 접촉은 담당 목사가 담당합니다.

Notes on Procedure of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Child Abuse:

아동 학대 혐의 대응 절차 참고 사항:

NOTE 1: The conference communications department is a good source of help when media questions arise.

The church spokesperson should generally convey a spirit of concern for the spiritual,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all who are affected and assure that the matter is being diligently and appropriately handled.

NOTE 2: The question that sometimes arises is: "What about confidential communication with a clergy person?" Many states have laws addressing "clergy confidentiality."

Thus, a clergy person may be confronted with the dilemma of discovering or suspecting abuse in the setting of a privileged conversation.

While the church has historically placed a high value on clergy keeping such confidences, the 2016 United Methodist Book of Discipline, par. 341.5, provides an exception in cases of suspected child abuse or neglect. Again, the moral imperative is to do what will best protect children.

참고 1: 대중 언론사와 접촉하기 전에는 연회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대변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염두에 두며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2: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 "성직자와 나눈 상담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많은 주에서 "성직자 기밀 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는 일대일대화 도중 학대 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목회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2016

연합감리교회 장정, par. 341.5 에 보면,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회자 비밀 유지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 비밀 유지를 넘어 도덕적 사명감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plementation of Safe Sanctuaries Policies: The Pastor, SPRC and Church Council will ensure that the church has a Ministry Safe Administrator and a yearly refresher for the entire congregation on the importance of Safe Sanctuaries and any updates to the Safe Sanctuary Policy.

Churches will utilize Ministry Safe for their background checks and their training. The Ministry Safe Administrator is in charge of sending background checks and training to volunteers and staff.

안전한 교회 정책의 시행: 담임목사, SPRC, 임원 위원회는 교회에 사역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회 정책과 사역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교회들은 Ministry Safe 를 신원 조회와 안전 교육에 사용합니다.

사역 안전 담당자는 자원봉사자와 사역자들에게 신원 조회와 교육 내용을 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Congregational Covenant and Adoption:

회중 언약 및 채택:

Congregational Covenant and Adoption (CHURCH NAME) United Methodist Church’s purpose for establishing this Child, Youth, and Vulnerable People Protection Policy and accompanying procedures is to demonstrate our total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physical wellbeing, emotional safety, and spiritual growth of all our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people.

We adopt this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 we as a congregation make at each baptism that we will “nurture children and youth in the Christian faith and life and include them in our care.”

With this policy, we renew our baptismal pledge to “live according to the example of Christ” and surround children,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with a “community of love and forgiveness, that they may grow in their trust of God, and be thus confirmed and strengthened in the way that leads to life eternal” (Baptismal Covenant II,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p.96).

This policy coordinates and supersedes the previous policies used by (CHURCH NAME) UMC.

As a Christian community of faith and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we are committed to conduct the ministry of the gospel in ways that assure the safety and spiritual growth all our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people, as well as all the workers with the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people.

연합감리교회의 언약과 채택 (교회명) 안에는 아동, 청소년 및 취약 계층 보호 정책과 그에 따른 절차를 수호할 것이라는 기반 위에 있으며, 목적은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의 신체적 보호, 정서적 안정,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회중으로서 선언한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우리의 보살핌 속에 포함 할 것을" 교회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세례 서약을 갱신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감싸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세례 언약 II, 연합감리교회 예배서, 96 페이지) 합니다.

이 정책과 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운영 절차를 구현합니다. (교회명)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y this policy and its accompanying procedures, we implement prudent operational procedures in all programs and events:

a. Training: We will conduct training on this policy and its procedures to assure that adults involved in children's, youth's, and vulnerable people's activities are aware of these standards and will abide by them.

b. Screening: All adults and minors above the age of fourteen who have direct involvement with activities covered by this policy and its procedures will be screened in accordance with Greater New Jersey Annual Conference policy. All people who are subject to this policy will be rescreened every three (3) years. Any person who was screened but, for whatever reason, has been absent from the (CHURCH NAME) UMC community for more than one (1) year and thereafter returns, will be rescreened.

c. Supervision: All activities covered by this policy and its procedures will be supervised by the appropriate number of screened adults.

모든 정책과 사역 프로그램은 그에 수반되는 절차에 따라 신중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a. 훈련: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본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b. 선별(신원조회): 본 정책 및 그 절차에 적용되는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모든 성인과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대 뉴저지 연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3 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은 후 (교회 이름) UMC 공동체에서 일(1) 년 이상 교회 불출석하다 다시 돌아온 사람은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c. 감독: 이 정책과 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활동은 적절한 수의 신원조회를 받은 성인이 감독합니다.

Conclusion: In all our ministries with children, youth, and vulnerable people, (CHURCH NAME) United Methodist Church is committed to demonstrating the love of Jesus Christ so that each of God's children here will be "surrounded by steadfast love, established in the faith, and confirmed and strengthened in the way that leads to life eternal." ("Baptismal Covenant 11," United Methodist Hymnal, p.44.)

This Child, Youth, and Other Vulnerable People Protection Policy is adopted by action of the of the (CHURCH NAME) United Methodist Church this (DAY) day of (MONTH), (YEAR)

결론: (교회이름)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례 언약 11",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4 쪽).

본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취약자 보호 정책을 (교회명) 연합감리교회가 (년), (월) 일 (일)에 채택합니다.